

特別企劃 시리즈

아시아地域工業所有權制度

○…… 이 글은 지난 83年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에서 아시아地域 각국 特……○
 ○……許廳을 통하여 調査, 發刊한 「THE SITUATION OF INDUSTRIAL PR……○
 ○……OPERTY IN THE COUNTRIES OF ASIA AND THE PACIFIC」를 基……○
 ○……本 資料로 하여 作成한 것이다. ……………○

◎ 第 4 回 ◎

● 싱가포르(2) ●

(d) 意匠에 關한 主要規定

英國에서 意匠登錄된 者는 英國에서의 登錄이 싱가포르에서도 登錄된 것으로 看做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權利도 싱가포르에서 누릴 수 있다.

(e) 特徵標章에 關한 主要規定

(i) 保護받는 標章의 種類

商標(商品用)(條例, 2 및 9條) 證明商標(商品用)(條例, 68條)

(ii) 保護받을 수 있는 標章

考案, 品質表(brand), 表題, 레테르(label), 티켓, 名稱, 署名, 單語, 文字, 數字 또는 이들의 結合(條例, 2條)

(iii) 權利獲得

商標 또는 證明商標를 使用할 權利는 登錄으로 獲得된다. 그러나 未登錄商標의 侵害에 對한 損害賠償이나 새로운 소송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許與받을 수 없다. (條例, 45(1), 46(1), 49 및 68(2)). 同一하거나 類似한 商標의 同時 使用의 경우에, 所有者가 多數인 商標의 登錄은 審判이나 登錄官에 의하여 許與될 수 있다. (條例, 25)

싱가포르內에서 해당 商品과 關聯하여 2年以上 어떤 標章을 善意로 使用한 者는 그 標章을 登錄出願할 權利를 가진다. (條例, 25)

다른 사람이 同一한 商品에 同一하거나 類似한 標章

을 使用 또는 登錄하기 前부터 계속적으로 使用된 標章은 간섭받거나 禁止되지 않는다. 또한 그러한 標章은 앞에 언급한 標章이 登錄되었다는 事實만으로는 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 (條例, 48(2))

(iv) 海外에서의 出願 또는 登錄의 效果

英國 또는 英國과 標章의 相互保護를 위한 協定을 맺은 나라에서의 登錄 또는 登錄出願된 標章은 싱가포르에서 그 標章의 登錄을 위해 6個月間의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 경우에는 해당국에서의 出願日을 싱가포르에서의 出願日로 본다. 이와 같은 우선권은 그 協정에 加入한 他國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條例, 71)

(지금까지, 우선권을 보장하는 국가는 계속 증가하여 45個國에 이르고 있다). 實유계 品과 關連된 標章이 싱가포르內에서 登錄되려면 그에 앞서 英國에서 登錄 또는 效力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登錄은 단지 英國에서 登錄한 所有權者나 그의 法的 계승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條例, 15(2))

(v) 登錄節次; 公告

出願申請을 하면 形式審查 및 調査를 包含한 내용심사를 받게 된다. 出願에 대하여 속고한 뒤에 登錄官은 상황에 따라 혹은 직권으로 拒絕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條例, 11, 12, 15, 68(10)) 出願이 되면 公報에 告示된다.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公告日로부터 2個月이내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條例, 18, 19, 68(11), 施行規則 37, 41)

(vi) 獨占權의 範圍

標章의 登錄으로 登錄權者는 指定商品에 그 標章을 使用할 獨占權을 갖는다. 만일 獨占權을 갖지 않은 사람이 同一 또는 類似한 어떤 標章이나 그 標章이 登錄

된 指定商品의 商去來에 混同을 일으킬 憂慮가 있는 登錄標章을 使用한 경우에는 그 獨占權을 侵害한 것으로 看做된다. (條例, 45, 46 및 68(2))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登錄에 의해 賦與된 商標權이 어떤 사람의 그러한 標章의 使用으로 侵害당하였다고는 看做하지 않는다.

(a) 商標權者 또는 登錄使用權者가 去來上 關係가 있는 商品에 關하여 그 商品 또는 그 商品이 일부가 되는 商品群에 그 商標를 通用하고 난뒤 除去 혹은 삭제하지 않았거나 또는 明示的 혹은 默示的으로 그 商標의 使用을 承諾하고 있는 경우

(b) 一部 또는 附屬物로 만들어진 商品이나 그 商標가 侵害없이 使用된 다른 商品에 關하여는, 그 標章의 使用이 指定된 商品을 表示하기 위하여 合理的으로 필요한 경우나 그 標章의 使用目的 및 效果가 어떤 사람과 그 商品사이의 關係를 그 事實이외에는 表示하지 않는 경우. (條例, 45(3) 및 68(4))

登錄商標의 所有權者나 登錄使用權者는 어떤 者가 이들 商品들에 關해 언급된 商標를 그 名稱의 所有權者나 先使用權者가 使用 또는 登錄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使用한 商品에 同一하거나 類似한 商標를 使用하는 것을 간섭하거나 禁止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使用이 立證된 경우에 그 者가 그들 商品에 關해 그 商標를 登錄하는 것에 異議를 제기할 수도 없다. (條例, 48 但書條項))

어떤 商標의 登錄으로 어떠한 者가 자신 또는 그의 前營業者의 姓名 또는 營業所名을 善意로 使用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또한 누군가가 所有者나 그의 登錄使用者 또는 그의 商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은 表示가 아닌 그 商品의 性質과 品質을 善意로 表示하는 것도 干涉받지 않는다. (條例, 52)

(vii) 存續期間 및 維持

出願日로부터 7年間(條例, 21 및 32) 存續期間滿了 日로부터 14年間 登錄을 更新할 수 있다. (條例, 34 및 35)

(viii) 使用 義務

登錄商標는 다음의 경우에 利害關係人이 法院이나 登錄官에게 申請함으로써 指定商品에 關해 原簿에서 抹消할 수 있다. 商標가 그 所有權者가 指定한 商品에 대해 그것을 使用할 善意의 의도없이 登錄되었을 때, 그 商標의 所有權者가 申請日 1個月前까지 指定한 商品에 對하여 그 商標의 善意의 使用을 實際로 하지 않았을 때, 또는 申請日로부터 1個月前까지 그 商標가 登錄된

또는 善意의 使用을 하지 않은 기간이 5年以上 經過되었을 경우이다. (條例, 40(1))

商標는 去來上 특수상황으로 여겨지는 非使用, 取消 또는 非使用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登錄抹消되지 않는다. (條例, 40(3))

創造語로 構成된 商標가 登錄에 關聯된 指定 商品들에 關하여 잘 알려져 있거나 非指定 商品들에 대한 그 商標의 使用이 指定商品에 關聯한 商標를 使用할 권리를 가진 사람과 非指定商品 사이의 去來上 關係를 表示하는 것으로 使用되었을 경우에는, 그 商標가 非指定商品들에 使用되지 않거나 使用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非指定商品들에 對한 防護商標로서 그 商標所有權者의 이름으로 登錄될 수 있고 登錄된 동안에는 非使用을 이유로 이들 非指定商品에 關하여 抹消되지 않는다. (條例, 41(1))

登錄된 使用權者에 의한 商標의 使用은 그 商標의 所有權者에 의한 使用으로 간주된다. (條例, 30(2))

法院 또는 登錄官은 하나의 登錄聯合商標 또는 그 同一性を 實質的으로 損傷시키지 않는 附加 혹은 變更을 한 商標의 사용은 이 條例에 근거하여 規定된 實施義務를 갖도록하여 허락할 裁량을 가진다. (條例, 29 (단서조항))

登錄된 商標 全體의 使用은 또한 同一 所有權者의 名義로 登錄된 그 一部の 商標의 使用으로 看做된다. (條例, 27)

輸入商品의 商標는 싱가포르에서 出願함으로써 이들 商品에 對한 使用要件을 구성한 것으로 看做될 수 있다. 또한 그들 商品이 國內市場用이라면 해당 國家에서 使用되어졌던 商品들에 關하여 싱가포르내에서 취해진 그 밖의 行爲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條例, 72(1))

(ix) 讓渡 및 實施權 許與

讓 渡

登錄商標는 指定商品의 全部 또는 一部에 대하여 營業과 함께 또는 營業과 分離하여 讓渡할 수 있다. 營業과 分離하여 이루어진 讓渡는 登錄官의 지시로 公告될 때 까지 効力を 가질 수 없다. (條例, 42(1)(2)(7))

未登錄 商標가 登錄商標와 同一한 營業에서 使用되어 있거나 登錄商標가 移轉된 商品과 관련하여 同一者에게 同時에 移轉되었다면 登錄商標와 同一한 方法으로 讓渡될 수 있다. (條例, 42(3))

商標가 讓渡의 結果로서 同一商品 또는 商品表示에 關連하여 독립권이 2이상의 者에 속하게 되거나 同一 또

는 類似한 商標의 使用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商標는 讓渡될 수 없다. (條例, 42(4))

商標가 讓渡의 結果로서 서로 다른 사람이 싱가포르의 다른 지역에서 한정된 標章이나 同一 商品 또는 商品表示에 관하여 同一하거나 類似한 商標의 使用에 대한 特權을 가질 수 있다면 讓渡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登錄官이 이러한 환경에서의 商標의 使用이 公共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이러한 讓渡를 인정할 수도 있다. (條例, 42(6)(a))

聯合商標는 分離되지 않은 全體로서만 讓渡 및 移轉될 수 있다.

出願이나 登錄의 主體가 된 어떤 商標가 同一商品 또는 商品表示의 観点에서 同一 所有權者의 이름으로 出願 또는 登錄의 主體가 된 다른 商標와 同一한 경우나 혹은 그 商標가 所有權者가 아닌 사람에 의해 使用되었다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만큼 類似한 때에는 登錄官은 그 商標가 聯合商標로 登錄되도록 要求할 수 있다. 덧붙여 다음의 事項은 聯合商標로 看做한다: 全體商標에 부가하여 개별적으로 등록된 商標의 部分, 한가지 登錄에 연속물로서 登錄된 商標, 및 잘 알려진 商標와 그와 관련된 防護商標(條例, 26, 27, 28, 29 및 41(3))

讓渡 및 移轉等으로 登錄商標의 權利를 인정받고자 하는 者는 登錄官에게 그 名稱이 登錄되도록 申請해야 한다. 登錄되지 않은 讓渡 및 移轉은 登錄官이나 法院에서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는다. (條例, 43)

實施權 許與

證明商標와 다른 商標의 경우에는 누구나 指定商品의 全部 또는 어떤 범위에 관하여 그 商標의 登錄 使用權者로 登錄될 수 있다. (條例, 30(1) 및 68(16))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商標의 登錄使用權者로서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商標權者와 연루하여 登錄官에게 申請해야 한다. 이때에는 實施權許與 계약서와 所有權者와 使用權者 사이의 세부적인 관계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登錄官은 이를 審査한 뒤 公益의 차원에서 拒絕하거나 許諾할 수 있다. (無條件으로 혹은 條件이나 制限下에)(條例, 30(4), (5) 및 (6))

(f) 消費者 保護에 關한 主要規定

어떤 商標가 同一商品 또는 商品表示에 關하여 다른 所有權者에 의해 이미 登錄된 商標와 同一하거나 오인될 정도로 類似하다면 登錄받을 수 없다. (商標條例, 23)

만일 登錄使用權者가 그 商標를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혹은 일으킬 우려가 있도록 使用했다면 登錄을 取消할 수도 있다. (商標條例, 30(8)(c)(i))

去來 또는 營業의 경우에 허위 去來表示를 商品에 適用하거나 廣告에 이러한 表示를 使用한 者는 처벌을 받는다. (消費者 保護條例, 4 및 7(1))

商標條例의 의미내의 商標나 商標의 一部가 되는 去來表示는 商品들에 관하여 使用할때 다음의 모든 條件을 충족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 去來表示가 된다.

- 一. 消費者保護條例가 통과되기 전에 使用한 경우.
- 一. 消費者保護條例의 施行日까지 그 商標가 商標條例를 근거로 登錄되었거나 혹은 指定商品과 所有權者間의 去來上 연결을 表示하는데 使用되었을 경우.
- 一. 適用된 商標가 商標條例의 근거하에 그 商品들과 所有權者 혹은 登錄使用權者間의 연결을 表示하는데 使用되었을 경우.
- 一. 그 商標의 所有權者 혹은 제송자가 消費者保護條例 施行日 당시의 所有權者와 同一한 者일 경우. (消費者保護條例, 8)

商品에 그 商品과 관련된 指示事項 혹은 去來表示를 包含하든지 않하든지 어떤 정보를 表示 또는 동반하는 것이 그 商品을 供給받는 사람들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해당장관은 그러한 事項을 表示 또는 동반시킬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위반시에는 그 商品의 供給을 제한 또는 禁止시킬 수 있다. (消費者保護條例, 9)

(g) 採擇 혹은 使用되는 國際分類

단지 商品에 관하여 使用된 表章의 登錄을 目的으로 하는 商品 및 營業을 위한 國際分類(規則, II)

(h) 訴訟節次의 所管 官廳

(i) 異議申請

特許 및 意匠: 規定이 없다.

商 標 : 異議申請은 商標登錄官에 의해 判定된다.

登錄官의 決定에 不服할 時에서 法院에 提訴할 수 있다. (條例, 19(4)(5))

(ii) 無 効

特許나 意匠의 登錄無効는 上級審에서 결정된다. (特許 施行令, 9, 意匠 施行令4), 登錄商標의 取消는 申請人의 선택에 따라 法院에 要求할 수도 있고, 그에 앞서 登錄官에게 要求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登錄官의 決定은 法院에 의해 反復될 수도 있다. (商標條例, 39,

61 및 64)

(iii) 侵害

特許 및 意匠 : 規定없음

商標 : 法廷에 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2. 政府 所管部處

(a) 名稱 및 住所

Registry of Trade Marks and Patents, 305
Tanglin Road, Singapore 1024

(b) 所屬 : The Ministry of Law

(c) 機能 : 다음의 主要機能이 있다.

- 一. 特許나 商標의 出願 接受
- 一. 形式審査 및 商標에 관해서는 內容審査
- 一. 異議申請된 商標의 審理
- 一. 特許, 商標 및 強制實施權許與의 登錄

(d) 다른 國家 혹은 國際機構와의 關係

外國의 工業所有權 官廳과의 협정도 없고 技術開發 分野에 대한 2개국간 혹은 多國間的 프로그램에도 현재까지 참가하지 않고 있다.

(e) 職員

登錄官 및 登錄官 대리외에 14名의 職員이 있는데 그 중에서 3名이 行政관이고 11名이 事務員이다.

(h) 資料

싱가포르 特許集 및 약간의 特許개요는 Registry of Trade Marks and Patents에서 利用할 수 있으나 技術情報은 SISIR (the Singapore Institute of 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3. 統計

(a) 特許

年 度	出 願			登 錄		
	內國人	外國人	計	內國人	外國人	計
1978	2	632	634	2	546	548
1979	—	864	864	—	735	735
1980	2	631	633	1	548	549
1981						
1982	4	644	648	3	516	519
1983	5	852	857	3	388	391

(b) 商標

年 度	出 願			登 錄		
	內國人	外國人	計	內國人	外國人	計
1978	1932	2615	4547	749	1634	2383
1979	1986	3113	5099	494	866	1360
1980	2072	3051	5573	784	1715	2499
1981						
1982	3008	3879	6887	615	1474	2089
1983	2664	3994	6658	727	1995	2722

特許 情報

(1) 政府 所管 部處 또는 機關

The Singapore Institute of 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SISIR), (179 River Valley Road, Singapore 0617, Maxwell Road, PO Box 2611, Singapore 9046)

이 기관은 政府內 또는 個人에게 科學 및 技術情報을 제공하는데 主任務는 The Industri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ITIS)이다.

(2) 資料

SISIR은 1979年 부더의 英國의 新法 및 1971年 부더의 舊法에 근거하여 發給된 特許 및 1979年 이래 美合 衆國에서 發給된 特許에 관한 資料를 가지고 있다.

SISIR은 DIALOG Information Service, INFOLINE 및 SDC Orbit에 의해 제공되는 資料와 연결되는 on-line을 가지고 있다. <㉞>

가정에서 뿌린 정직 사회에서 꽃핀 신뢰